동부건설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입주자 모집공고

센트레빌 CENTREVILLE

■ [코로나19 관련 홍보관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관람(방문 사전 예약)과 사이버 홍보관(http://www.bb-centreville.co.kr/)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홍보관 및 사이버 홍보관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이버 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http://www.bb-centrevill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홍보관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사전 안내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홍보관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 외 동반 1인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 홍보관 방문 기간 내 입장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거나,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청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홍보관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홍보관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 (☎02-582-1113)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19.입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3 규정에 의거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건축법 제 48조3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내진등급은 1등급, 내진능력은 VII-0.169g 입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15조, 「주택법 시행령」 27조에 의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는 유니피커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주택형별 층·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02-582-1113)는 유니피커(http://centreville.unipicker.com/)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상담 및 분양 홍보관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에 의거 분양 홍보관 및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홈페이지(http://www.bb-centreville.co.kr/)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분양 홍보관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번지 외 3필지
◩ 공급규모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지하 2층, 지상 6층 5개동 총 90세대 중 일반공급 23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1.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일반분양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도시형 생활주택	81	81.06	16.94	98.00	53.70	151.70	59.79	2
	69D	69.24	14.60	83.84	45.87	129.71	51.07	3
	68A	68.89	14.49	83.38	45.63	129.01	50.82	3
	68B	68.36	14.95	83.31	45.28	128.59	50.42	3
	67A	67.76	13.98	81.74	44.89	126.63	49.98	3
	67B	67.32	14.28	81.60	44.60	126.20	49.66	1
	67C	67.04	14.24	81.28	44.41	125.69	49.45	3
	64	64.48	14.25	78.73	42.72	121.45	47.56	3
	50	50.84	11.35	62.19	33.68	95.87	37.50	2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홍보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시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면적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해당동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22.03.25	2022.06.25	2022.09.25	2023.01.25	2023.04.25	2023.07.25	
81	2	105	3	1	1,401,655,591	258,344,409	1,660,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166,000,000	498,000,000
			2	1	1,386,456,916	255,543,084	1,642,000,000	164,200,000	164,200,000	164,200,000	164,200,000	164,200,000	164,200,000	164,200,000	492,600,000
69D	3	102	3	1	1,209,983,411	223,016,589	1,433,0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143,300,000	429,900,000
			2	2	1,199,006,590	220,993,410	1,420,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142,000,000	426,000,000
68A	3	104	4	1	1,156,788,048	213,211,952	1,370,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137,000,000	411,000,000
			3	1	1,143,278,115	210,721,885	1,354,0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406,200,000
			2	1	1,133,145,665	208,854,335	1,342,0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134,200,000	402,600,000
68B	3	104	5	1	1,166,076,128	214,923,872	1,381,0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414,300,000
			4	1	1,155,099,307	212,900,693	1,368,0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136,800,000	410,400,000
			2	1	1,132,301,294	208,698,706	1,341,0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402,300,000
67A	3	104	5	1	1,144,122,486	210,877,514	1,355,0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135,500,000	406,500,000
			4	1	1,133,990,036	209,009,964	1,343,0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134,300,000	402,900,000
			2	1	1,110,347,652	204,652,348	1,315,0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394,500,000
67B	1	102	2	1	1,166,920,498	215,079,502	1,382,0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138,200,000	414,600,000
67C	3	104	4	1	1,127,235,069	207,764,931	1,335,0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133,500,000	400,500,000
			3	1	1,114,569,506	205,430,494	1,320,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396,000,000
			2	1	1,104,437,056	203,562,944	1,308,0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130,800,000	392,400,000
64	3	102	4	1	1,113,725,136	205,274,864	1,319,0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395,700,000
			3	1	1,101,903,944	203,096,056	1,305,0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130,500,000	391,500,000
			2	1	1,091,771,494	201,228,506	1,293,00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129,300,000	387,900,000
50	2	101	3	1	852,814,546	157,185,454	1,010,000,000	101,000,000	101,000,000	101,000,000	101,000,000	101,000,000	101,000,000	101,000,000	303,000,000
			2	1	840,148,984	154,851,016	995,0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99,500,000	298,500,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홍보관 분양사무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합니다.
※ 면적 합산 시 소수점 2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분양금액은 각 세대별 인지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유상 제공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본 공동주택의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되며,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선택 요구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시설(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층별 면적 산출근거표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공용면적의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인 서울시 서초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 됩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 및 구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납부지정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일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서초구청 「주거개선과-24249」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 및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양 홍보관(T.02-582-1113)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일반공급 청약 및 당첨자 계약 안내

▣ 접수일자

구분	신청 접수	동호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당첨자 계약
일시	11월 23일(화) 09:00 ~ 18:00	11월 24일(수) 14:00	11월 25일(목) 10:00 ~ 16:00
접수 홈페이지	http://centreville.unipicker.com/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신청자격	• 접수 시 신청금은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건과 무관함 (청약통장 불필요, 세대주 무관 등) • 당 사업지 신청접수일(11월 23일(화)) 현재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및 법인 → 당첨자 중에서 상기 지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당첨은 자동 취소됨 •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함. • 당첨자는 반드시 당첨자 명의로 계약해야 함. (배우자, 가족 등 불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및 방법 : 상기 신청기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하여 유의사항 및 본인인증 후 인터넷 접수 (인터넷과 연결된 PC로만 접수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함) • 1인 1타입 신청만 가능(2개 이상의 타입신청할 경우 모두 당첨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홍보관 직접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법인 접수 시	• 청약 신청서(홍보관 비치)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방법 : 추첨은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컴퓨터 난수를 활용(유니피커 프로그램)하여 신뢰도 있는 업체<(주)봄봄모바일>에서 진행하며 당 사업주체는 이를 홈페이지 및 분양홍보관에 단순 고지예정
예비 당첨자 선정	• 예비당첨자는 타입별 세대수의 10배수를 순번을 부여하여 추가로 선정하며, 미계약세대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동호수 지정계약 방식으로 계약 진행

▣ 당첨자 동·호수 발표 및 계약 체결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시 : 11월 24일(수) 14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당사 홈페이지 및 홍보관 명단 게시, 개별통보(전화 or 문자) ※ 추첨 진행상황에 따라 당첨자발표 고지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당첨자 지정계약일	• 계약일시 : 11월 25일(목) ※ 지정계약시간은 10:00 ~ 16:00까지 계약하여야 함.(입금 및 계약서류제출 후 계약서 발행 조건) • 당첨자 미계약시 예비당첨자 계약일 : 11월 26일(금) 10:00 ~ 16:00
당첨자 계약장소	• 당사 홍보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2-4 석하빌딩 2층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계약시	분양계약금, 발코니확장비 및 옵션계약금 입금증	• 계약금 지정계좌에 입금한 입금증 (현장 수납 불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함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대리인 계약시 (추가)	인감증명서(계약자)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인감도장(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며, 본인(계약자)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
	위임장(계약자)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인장(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확인	
법인 계약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대표이사 본인계약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상기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자 유의사항
-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는 서울시 서초구(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접수 시 신청금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 홍보관에서는 법인 청약신청 한해서 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은 불가합니다.
- 법인 청약시 법인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추가 청약은 불가하오니, 만일 중복청약시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주민등록표 등본 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만19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당첨사실은 취소되며 납부된 계약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됩니다.
 ※ 잔여세대에 대한 투기과열 예방을 위하여 신청자격 요건을 제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잔여세대의 신청 특성상 투기과열지구 청약조건과는 무관하나, 당첨이후 전매 및 대출관련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사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5조의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분양가 총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형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자납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규제사항으로 계약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당첨자는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오니 신청접수 시 전화번호 기재에 유의 바라며, 전화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당첨사실이 미통보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신청 접수시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드시 당첨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당첨 포기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기간 내 계약서를 발급 및 날인하지 않으면 미계약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타입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확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404-250551	동부건설(주),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 품목 안내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 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 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4-267701	동부건설(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 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81	14,000,000	2,000,000	12,000,000	
69D	16,000,000	2,000,000	14,000,000	
68A	13,500,000	2,000,000	11,500,000	
68B	15,000,000	2,000,000	13,000,000	
67A	12,500,000	2,000,000	10,500,000	
67B,C / 64	17,000,000	2,000,000	15,000,000	
50	13,500,000	2,000,000	11,50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 확장 분양가 등 해당내용을 반드시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에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창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벽체의 돌출 및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도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변경되는 거실조명은 발주자(조합) 요구사항이 반영한 사항으로 거실조명을 다른 방식은 선택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조명방식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형(유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가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등 외부 창호,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선택 품목
 ※ 모든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추가 선택 가능
 (1)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내용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바닥	81	광폭 텍스처 강마루 (거실/주방/침실)	100,000	1,150,000	1,250,000
	69D / 68A / 67B / 67C		100,000	1,100,000	1,200,000
	68B / 67A		100,000	1,000,000	1,100,000
	64		100,000	1,150,000	1,250,000
	50		100,000	800,000	9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81 / 67A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100,000	550,000	650,000
	69D / 68B / 67B / 67C / 64		100,000	500,000	600,000
	68A		100,000	600,000	700,000
	50		100,000	400,000	500,000
주방가구	81 / 68B	한샘 EURO700 유리도어	600,000	5,700,000	6,300,000
	69D / 67A / 67B / 67C / 64		600,000	5,100,000	5,700,000
	68A		700,000	6,900,000	7,600,000
	50		400,000	3,600,000	4,000,000

※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류는 본공사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내부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은 마감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옵션 선택시, 주방가구의 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마감재 옵션 미선택시 각 부위는 기본형 마감으로 시공됨. (바닥 : 일반강마루,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주방가구 : 주문제작가구)

(2) 가전기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전 주택형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100,000	400,000	500,000
전 주택형	전기 하이브리드 쿡탑(하이라이트 1구 + 인덕션 2구)	100,000	600,000	700,000
전 주택형	전기 쿡탑(인덕션 3구)	100,000	900,000	1,000,000
전 주택형	전기오븐	100,000	300,000	400,000
전 주택형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500,000	5,000,000	5,500,000
전 주택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100,000	1,000,000	1,100,000

※ 주방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시 하부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으며, 미선택시 냉장고를 배치할 공간과 상부장만 제공됨 ※ 빌트인 냉장고는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음
※ 빌트인 가전 관련 제조사 및 모델명 등은 홍보관 및 주택공급 계약 체결 이후, 별도 추가옵션계약 진행 전 안내할 예정임.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에 따라 냉장고장 디자인이 변경되오니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시 도어 열림방향은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합계
81 / 69D / 68A / 68B 67A / 67B / 67C / 64	거실, 안방	400,000	3,100,000	3,500,000
	거실, 안방, 침실1	500,000	4,300,000	4,800,000
	거실, 안방, 침실2	500,000	4,300,000	4,800,000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00,000	5,400,000	6,000,000
50	거실, 안방	400,000	3,100,000	3,500,000
	거실, 안방, 침실	500,000	4,300,000	4,8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의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제조사는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제품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은 설치 안됨.

III 설계유의사항

[공통사항]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도시형생활주택 브랜드 및 단지명은 공사도중 또는 입주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에는 별도 계약품목(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등 플러스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에 대하여 상기 공급 금액 외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면적 변경에 대한 별도의 분양가격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므로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주택형별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 계획변경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 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비의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에 의거 위약금이 공제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 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배치(수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의 의지와 무관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결정에 의해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 이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인지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됩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 바랍니다.

[마감재]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CG, 홍보관에 비치된 마감재보드, 인쇄물을 통해 반드시 확인바람
-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홍보관에 비치된 마감재리스트 및 홍보물상에서 표현되는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됨
- 본 홍보물 가구 및 내부마감재는 실제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디디팜/걸레받이, 욕실젠다이, 주방상판, 화장대상판 등에 사용된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홍보관에 비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음
- 공장생산자재(예 : 타일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세대 바닥 마루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찍힘, 갈라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홍보물]
- 홍보관에는 단위세대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므로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을 참고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바람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에는 입주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를 위한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세대창고,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배치도 및 조감도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바람 •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창호의 사양, 재질 등이 다른 창호가 설치됨
- 세대에 설치되는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음
- 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CG, 카탈로그의 평면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바닥,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됨 • 거실 아트월에는 줄눈이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욕조 하부 및 샤워부스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철재방화문(현관, 대피공간 등)은 방화성능 관련하여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오니 계약전 확인 후 계약바람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일반사항]
- 공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성능, 상품개선,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지하층 및 지상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 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코아 평면 및 창호의 형태, 크기, 위치 등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 침실1)에 설치됨(거실_스탠드형, 안방_벽걸이형) [시스템에어컨 플러스옵션 선택시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GX, 카페),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기타관리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SIGN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계획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의 경계부 마감(법면, 돌쌓기, 옹벽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문양포함), 동 출입구, 발코니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 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발코니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호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 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도시형생활주택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창호,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자전거 보관소, 주민공동시설, D/A(설비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정화조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위치, 크기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정화조 배기탑이 형성되는 일부 동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다소 침해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측뢰 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상기 건축물 높이의 5분의4 지점이 60m 이하일 경우 60m부터 측뢰 피뢰침이 설치됨)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짐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인·허가 조건(서초구 가이드라인 포함)변경, 각종 인증(녹색건축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단지공통]
- 본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협의내용(동덕여중)에 따라 단지 경계 내 임에도 불구하고 2동과 3동 남측으로 2m, 5동 남측으로 1m 특히 5동 북동측은 사선형태로 통학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배치도, 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 및 분양전 문의하여 확인바라며, 이는 실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환기용D/A,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 및 크기, 제연휀룸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실외기 설치공간이 단지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해충, 조망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음식물 포함)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등 단지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현관, 지하출입구, 건축물 및 구조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이동통로는 공동으로 사용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세대의 경우는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 거실창호의 사양 등으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거실 외부창호는 입면분할이중창(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 단 78타입 제외)으로 이삿짐 사다리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 세대는 층이나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날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 영구음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일조량은 주변 지형이나 수목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조량에 대하여 확정적인 설명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향후 입주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사인물,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홈IoT 서비스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 • 도시형생활주택지붕 옥상, 옥탑층 혹은 외부벽면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뢰, 태양광발전설비,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줄 수 있음
- 단지내에는 정화조,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계획 상 커뮤니티 지원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과 인접한 동은 주차장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문양(측벽, 옥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측벽 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침실2,3 벽체에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가 설치되며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위치가 변경됨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4동, 105동 필로티내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보행 및 비상차량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동선) 및 주차장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 및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구간 자전거보관대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일부 세대에 테라스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와 시각적 간섭 등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단지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협의내용에 따라 101, 102, 103동의 남측과 동측, 104동의 서측, 105동의 남측, 동측으로 단지내 공공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며, 단지 입주민 외에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 • 102동 지하1층에는 휘트니스, 카페, GX, 104동 지하1층에는 스터디룸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세대에는 소음, 진동, 냄새 등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 부대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의 위치에 따라 동 별로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거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거리가 길어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주변과의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법면, 옹벽, 석축 등의 설치에 의해 조망, 일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인지 후에 계약 체결 바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천연자재(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생산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조경계획, 야관경관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대비 동등 수준으로 시공됨)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D/A 위치 및 개소,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 사면, 자연석 및 계단, 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주민공동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전체 동의 1층은 필로티가 설치되어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사용될 계획이며, 태양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원은 각동 공용부 전기사용 부분에 일부 사용할 계획임. 제품 및 설치장소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다락 지붕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됨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의 반사에 의한 불편함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 별로 설치용량이 상이할 수 있다 • 녹색건축인증 등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각종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전기인입 및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내 설치 예정이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설치된 세대 창고는 각각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며, 임의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름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등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시공하지 않음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각 동 저층세대는 수목식재에 의하여 경관 및 일조, 조망 등에 방해가 있을 수 있음
- 1~3동, 4동, 5동의 시스템(홈네트워크, 주차관제, 원패스, CCTV, 소방, 방송, CATV 등)은 각 블록별로 구성되며 통합운영 되지 않고, 블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주차의 경우 1~3동, 4동, 5동 입주한 블록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며, 입주한 블록외 주차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당사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1~3동 블록에만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동,5동 차량 차단장치는 주차장 진입로 구조가 협소한 관계로 차번인식으로 오픈되지 않을수 있으며, 이 경우 무선리모콘으로 오픈하고 입차를 하여야 한다
- 각 관리시스템(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주차관제, 소방시스템 등)은 블록별로 설치되며 통합관리 되지 않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 각종 환기설비를 위한 환기캡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배치]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차도, 소공원, 연결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포함)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측면의 기존 시설(학교, 도로, 빌라 등)과의 단차이로 인한 옹벽이 기 설치되어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 쓰레기수거장은 101동, 102동, 103동은 지상1층 필로티 내부, 104동, 105동은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은 104동 방향 측벽에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수거차량 상시 접근 등에 의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 쓰레기수거장은 1층 필로티 및 지하층에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수거차량 상시 접근 등에 의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주동]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외부장식물 또는 차량램프지붕에 의해 조망, 일조 침해 및 빛반사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주동 코어(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평면은 동별로 상이함 • 단지 출입구의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입·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커뮤니티(피트니스, 카페, GX, 스터디룸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됨 • 단지에 설치 되는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지 - 조경]
- 단지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옥상녹화 계획은 사업계획변경 또는 친환경 인증요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일부 천정부에는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에 계획되어 있는 세대창고는 제습기 설치예정이며, 관리에 따라서 습기가 다소 발생할 수는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여성우선주차, 경차, 전기차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트렌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렌치 시공시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음

[단지 - 주출입구]
- 주출입구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은 101동 지하1층에 설치되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 공통]
- 본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고,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욕실 상부에 상부층의 설비배관(위생시설 및 오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리를 고려하여 도면상의 설치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전열교환기)로 인해 가동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므로 카탈로그를 참조바람 • 대피공간 내부마감, 레벨, 출입문 및 창호의 제조사, 크기, 색상, 사양, 위치, 열림방향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3층 이상 6층 이하 세대는 발코니 내부에 완강기가 설치 되고, 발코니 창호로 대피할 수 있게 됨. 또한 바닥에 피난사다리는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전 해당세대의 완강기 위치 및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사용승인 전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은 절대 금지되며, 사용승인 후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진행하되 그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름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등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출입문 개폐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불가 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세대내 창호의 설치위치, 크기, 사양, 색상, 디자인, 제조사, 문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창은 외관 디자인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시공시 세대간 또는 각실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골조, 턱높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세대의 테라스에 설치되는 난간의 크기, 높이, 위치, 형태 및 사양은 실시공시 동등수준의 품질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악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노출되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홍보물의 평면(카탈로그, 리플렛, 홈페이지 등)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타일의 줄눈 나누기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기둥 및 구조벽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폭이 창호보다 넓지 않고 같게 설치되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가구(주방, 일반, 욕실 등) 후면(벽, 천장, 바닥면, 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 악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됨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짐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및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을 적용하여 원패스키 또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을 통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하며, 원패스키는 세대당 2개가 지급됨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확장형 선택 및 가구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침실 또는 주방,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설치되어 사용면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도시형생활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세대 거실에 설치되는 창호의 유리난간의 제조사, 크기, 형태, 재질, 사양, 접합방식,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위치, 재질, 형태, 사양, 디자인, 색상,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발코니 난간(유리난간형, 콘크리트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제조사, 형태, 사양, 재질, 높이, 크기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함
- 일부세대 테라스 조성으로 인해 배수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계획되며, 이로 인해 일부배관이 노출되며, 해당 주동의 평면 및 입면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위세대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반,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위생기구, 샤워부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확장형과 비확장형 인접 세대간 경계벽에 단열을 위한 단열재 및 조적벽체가 설치되어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임
- 현관 디딤석의 경우, 본 공사시 분절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적용되는 시스템가구의 레이아웃, 컬러, 시공 디테일, 하드웨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64, 68C 타입은 설계 여건에 따라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 발코니/실외기실]
- 타입별 환기장비 설치위치는 상이하며, 환기장비 설치시 해당장비와 덕트는 노출시공됨
- 환기장비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헤파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사용자의 사용패턴에 따라 교환주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간 미교환시에는 환기장비 가동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발코니 외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후 설치하여야 함 • 개별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 바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등으로 예방 해야함(겨울철 실내습도가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조주방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64 타입(확장시)은 설계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상부에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 창호]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위치,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 전기/설비]
- 세대 내 분전반은 구조 및 인테리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내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에 시공되며 설치면이 10mm 이내로 돌출되어 시공됨 • 거실 조명은 발주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간접조명에 다운라이트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반 적인 조명방식에 비해 조도가 낮을수 있음
- 식탁조명은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팬던트 타입으로 간섭시 입주가 본인 높이를 조정하여야 함
- 다용도실 및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타입별 환기장비 설치위치는 상이하며, 환기장비 설치시 해당장비와 덕트는 노출시공됨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래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시공사에서 제조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제조사에 따라 제품의 성능 및 시스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등 천장이 설치되지 않는 실에 소방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세대별 개별 보일러 설치로 인해 보일러 작동시 인접한 실내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건조기를 병렬배치시 보일러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음
- 기능상의 이유로 설계도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옥상에 설치되는 공동주택 공용으로 사용되는 통기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흡출기, 통기관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인접세대 및 고층부 세대에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됨
- 홈IoT 및 AI스피커 서비스의 경우 KT나 LGU+중 1개사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통사/포털사의 유료/무료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홈IoT 및 AI스피커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홈IoT 및 AI스피커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 기타]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근접한 실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냉방 부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되는 구간은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공기청정, AI시스템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오며,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냉난방용 에어컨은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물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입면]
- 주동 색채, 옥상 구조물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 외부에 적용된 측벽장식물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 방식, 색상,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도시형생활주택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 행 사	시 공 사
상호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상가동 1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71-0087335	110111-0005002

■ 분양홍보관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bb-centreville.co.kr/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2-4, 2층
■ 분양문의 : 02-582-111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시행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동부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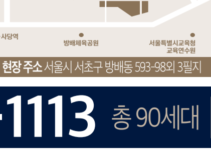

현장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93-98외 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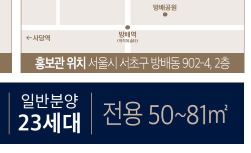

홍보관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2-4, 2층

분양문의 02)582-1113 총 90세대 | 일반분양 23세대 | 전용 50~81㎡